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2025년도 하반기 (방문형)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

2025. 8.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자원실

목 차

1.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1
2.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 신고 ····· 2
3.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3
4.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 ····· 4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5
6.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 7
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8
8.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 10
9. 통합재가서비스 ····· 12
10.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기관 사례관리 강화 ····· 14
11.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통보 · 관리 ····· 16
12.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25.6.~) ····· 18
13.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 ····· 20
14.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 21
15.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재가방문형) ····· 22
1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 제도 ····· 23
17. 2025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운영 ····· 24
18.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멘토링 사업 운영 ····· 25
19.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 26

[참고자료1] 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 28

1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목적

○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구 분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벌칙·과태료
제35조 1항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2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3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5조 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5항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6항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처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구 분	해당 조항	벌칙·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제35조1항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제35조5항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제35조6항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 신고 | 기관관리부 3팀

☐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정보 반영 통한 기관 지원 등 안정적인 장기요양제도 운영 기반 조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 자료 연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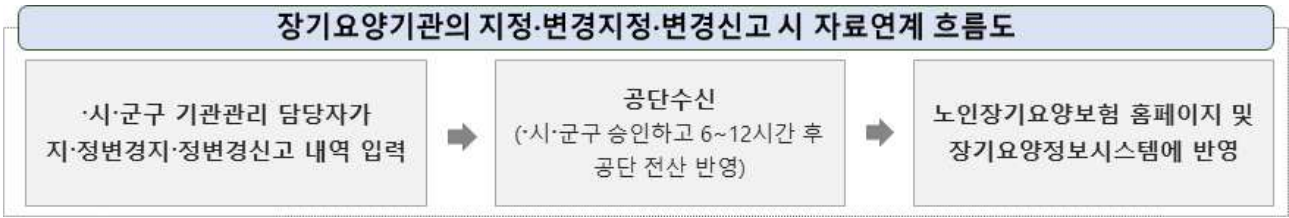

☐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변경 지정	변경 신고	기타사항 등
변경사항	· 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기관의 명칭·소재지 · 기관의 법인 대표자 · 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대표자 연락처 · 기관 팩스번호 · 기관 전화번호 등
접수처	신고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군.구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인력(시설) 변경 현황, 면허증, 자격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인력현황, 시설현황, 법인등기 부등본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지자체 별 구비서류 상이)

☐ 기타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지정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

○ 재난(응급)상황 대응 및 기관 지원 등 지자체 및 공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 요청**

3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기관관리부 4팀

□ 추진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 정보게시를 통한 수급자 알권리 강화 및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법 제69조(과태료)제1항제2의2호: 500만원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 화면 안내

◆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화면 내 각 탭별* 해당사항 입력

* 기본정보/정원·현원/비급여항목/프로그램운영/기타 준수사항/CCTV설치현황/사진/공지사항/게시판

○ 급여종류별 게시항목

급여종류	게시항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4종)	① 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 홈페이지 주소, 주차시설 등 기재사항 없을 시 공란이 아닌 '없음'으로 필수입력 ② 보험가입여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 복지용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 기관기호2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1' 또는 '2'로 시작하는 기관만 정보게시 대상

○ 정보게시 주기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즉시 기관정보 게시
- 게시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즉시 최신 정보로 수정

※ 전산 매뉴얼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341번)

4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절차 | 기관관리부 4팀

□ 추진목적

○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인권교육」 안내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대상)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 (방법·이수시간) 온라인·방문·직장(자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인권교육

-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법·이수시간) 집합·방문·온라인 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 (제공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noinedu.or.kr/ 또는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또는 1600-8810

□ 노인학대 신고 방법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 (교육실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1577-1389)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110), 경찰서(112)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종사자관리부 4팀

□ 추진목적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처우개선 도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6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 >

(단위: %)

구 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65.1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사회복지사, 가산범위 이내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배치가산금액 등 인정인원수만큼 인정**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1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입력

□ 주요내용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 공단 매월 제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신고

○ **(인건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참고사항 >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 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장기요양기관이 기관포털 전산화면에서 급여유형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직종별 합산하여 입력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과정 (예시) >

9월	10월	11월	12월
▸ 급여제공 (방문요양 등)	▸ 9월 급여제공에 대한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인건비로 지출**	▸ 10월 급여제공에 대한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기 전** ▸ 9월 급여제공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에게 **10월에 지출**한 **인건비내역을 공단에 제출**	▸ 9월 인건비 지출비율 **전산 반영**

※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종사자 인건비지출내역 신고**
※ 급여제공 후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인건비 비율 분모)가 전산반영까지 3-4개월 소요

□ 안내사항

○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주야간보호 조리원 배치가산금**
- 각종 **한시적 지원금**(검체 채취 지원금, 감염예방수당, 특장차량지원금 등)

*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참고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검색: "인건비")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타>게시판>공지사항(검색: "인건비")

6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 종사자관리부 4팀

□ 추진목적

○ 장기요양 종사자 권익과 인권보호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담보

□ 안내사항

○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및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상호협력동의서」 적극 활용

○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 적극 활용

제목	주요내용	게시위치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 인권침해유형 ·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장기요양요원보호 관련 법령 등	❶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e-Book→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상호협력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포함) ❷ 장기요양기관 포털 → 기타→게시판 공지사항
상호협력 동의서	· 장기요양요원 및 수급자의 상호 인권 존중	❷ 장기요양기관 포털 → 급여계약통보서 → 게시판→ 자료실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	·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	❶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게시번호 61255) ❷ 장기요양기관 포털 → 기타→ 게시판 공지사항 (검색: "표준근로계약서")

□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대표자, 시설장 상담 제외)

○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 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5.2.13.~12.31. 오픈채팅* 상시운영 … 유선상담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카카오톡 – 오픈채팅 – 검색 –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인사노무 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종사자관리부 2·3팀

□ 추진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및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

② 교육기관 지정

③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④ 보수교육 실시, 이수증 발급

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

⑥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이력관리

⑦ 이수증 제시

⑧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 청구

⑨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 지급

⑩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 요양보호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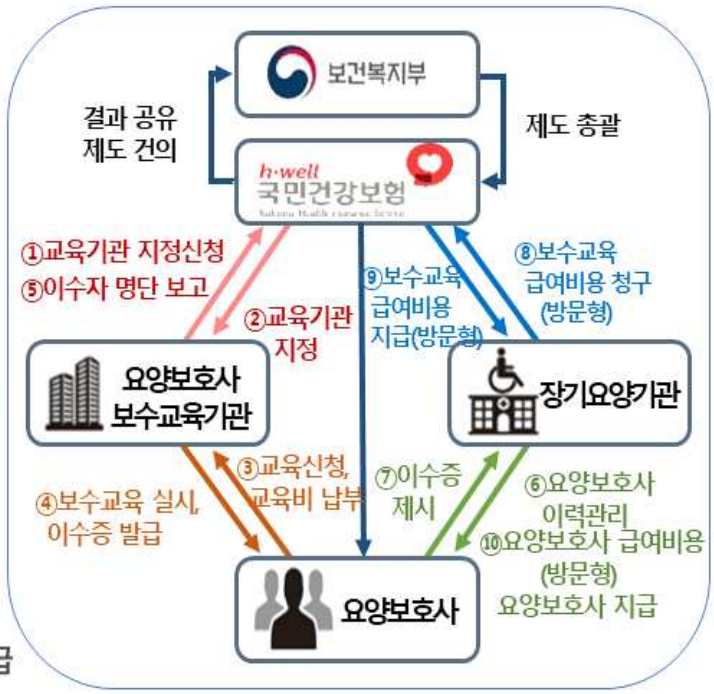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교육 시작일)** 2025.1.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 매 2년마다 1회 … 2025년은 홀수연도생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시간·방법)** 대면(8h) 또는 온라인(4h) ⊕대면(4h)

※ 온라인 ⊕ 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권고

○ **(교육과정)** 4개 필수 영역 … ★반드시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이수해야 인정됨

①요양보호사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온라인 교육 병행 시 ①②영역만 온라인 교육 가능, ③④영역은 반드시 대면교육

○ **(교육비용)** 대면(8h) 36,000원 / 온라인(4h) 12,000원 ⊕대면(4h) 18,000원

< 교육기관 찾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대면) 지정번호 “5번”으로 시작 … 지역별, 교육제공방법(대면클릭)

◦(온라인) 지정번호 “6번”으로 시작 … 전체 검색, 교육제공방법(온라인클릭)

☞ 장기요양기관 단체 신청 협조 또는 요양보호사 개인신청

□ 방문형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신청

○ **(대상)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시설, 주야간, 단기) 기관과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산정 제외

○ **(산정기준)** 대면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한해 2년에 1회

※ 대면(8h) 95,000원, 대면교육(4h) 47,500원

○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 제시

※ 복수의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1개소에만 원본 제시, 장기요양기관은 이수증 사본 3년 보관

○ **(청구기간)** 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이수한 다다음달부터 청구가능)

○ **(지급시기)**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소요

5월	6월	7월	8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기관) 이수결과 보고	(장기요양기관) 청구	지급
보수교육 이수한 달(5월)로부터 지급(8월)까지 최소 3개월			

8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요양급여개발부 1,2팀

□ 추진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5.1. ~ 12.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총 193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 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 기본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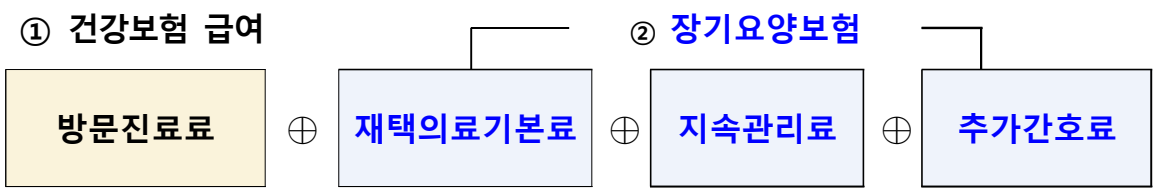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① **(건강보험 급여)**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1회당 본인부담* 30% 이내

– 방문진료료는 일차의료(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적용

('25년 기준, 단위: 원)

구분	급여비용(간호사 동행)		기준	본인 부담
	의원급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Ⅰ	**129,650** (162,650)	**137,920** (166,740)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별도 행위료 없음)	5~ 30%
방문진료료Ⅱ	**90,200** (123,200)	**95,230** (124,060)	추가적인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비 미포함(별도 행위료 있음)	
한의방문진료료	**106,290**	**해당없음**	한의사 방문진료 시(별도 행위료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료의 15% 부담

② (장기요양보험)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 제공

구분	금액	본인부담	기준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	없음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시 지급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7만원	없음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종결 시 50% 산정
지속관리료	**6만원**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시 지급
추가간호료	**52,310원 (1회당)**	15%*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 시 지급(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 감경대상·의료급여자·기초수급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중복 이용 제한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

신청 문의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관할 운영센터 ▸ 연계 신청	▸ 사전 면담	▸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및 신청서** 등 작성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정기 방문** (방문진료·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9 통합재가서비스 | 통합재가부 1팀

□ 추진배경 및 목적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 대부분은 1~2종*의 급여만 제공

* 재가수급자 79.6%는 1종 급여만 이용, 그 중 59.0%가 방문요양 이용('24.12.)

○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본 사업 실시**('25.3월~)

□ 주요내용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이용 희망자

○ **(제공기관) 하나의 기관기호**로 **①방문간호⊕방문요양, ②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시설·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인력기준) 서비스유형별 아래 기관 내 해당 직종 각 1인 필수(추가) 배치

①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내 간호사(시설장 제외),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

②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 **(서비스내용)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 ①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②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건강관리),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 지급

*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통합재가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을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월 한도액의 15%) 추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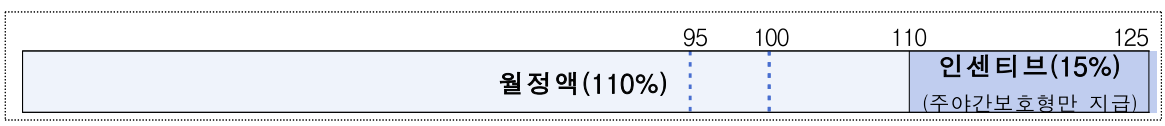

□ 추진경과 및 계획

○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등 검증을 위해 **'16.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1.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 단계로서 **예비사업Ⅱ** 추진(~'25.2.28.)

○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개정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3·4항 신설('24.1.2.개정, '25.1.3.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 등) 신설('25.2.28.시행) … '통합재가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통합재가서비스 **본 사업 실시**('25.3월~)

※ 총 181개소('25.7.1.기준) … 주야간보호형 99개소, 가정방문형 82개소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하반기 공모 예정('25.11~12월)

※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 참고자료

○ **관계법령(고시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25.2.11.발령, '25.3.1.시행)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⑦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개정('25.3.1.시행)

> **제4조의5(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고시 제13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 2.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0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기관 사례관리 강화 | 급여이용지원부 1팀

□ 추진배경 및 목적

○ 돌봄통합지원사업 시행('26.)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의 욕구 충족 필요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 사례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항

◈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목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주요과제)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 수급자 중심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자로서, 급여계약 단계에서 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탕의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수립, 이행관리
  -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사례관리, 매월 수급자 방문하여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
  - 추가 관리 대상자는 공단에 사례관리 의뢰, 지자체 및 공단 주관 사례회의 참여
- (건보공단) 조정자로서,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관리 및 수급자 중심의 급여조정·중재 역할 수행

• 빅데이터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 자체 발굴 및 기관 의뢰 수급자에 대한 급여점검 등
• 미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이용 유도

- **(지자체)** 복지자원 총괄자로서, 의료·돌봄의 추가적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자원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 운영 등

○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체계(사회복지사 교육교재)**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조사 결과와 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급여제공)**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전 필수사항으로 요양보호사 등에게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을 교육**하여 기능 상태에 맞는 필요한 내용의 급여 제공(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방지)

11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통보 · 관리 | 급여이용기반부 1팀

□ 추진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제공계획 수립·통보·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이용 지원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관리

- **(대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제외)
- **(절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
- **(시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
- **(방법)** 포털(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 이용

  ※ 화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서비스/급여계약통보서/급여제공계획서

- **(유의사항)**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작성 및 통보불가

• 급여제공계획서에 작성하려고 하는 급여종류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맞지 않는 경우, 수급자 욕구에 맞게 이용계획서를 재작성·발급받은 이후 등록 가능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은 출력일자 기준으로 확인·적용함

-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ex) 급여제공계획서 적용일자 2025.3.14.~4.10. 이후, 2025.4.11.부터 이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025.4.11.(당일)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않도록 확인)

•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 급여제공계획서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 공단과의 사례회의 결과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욕구조사 결과 반영을 위해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되고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변경 이외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 하지 않음

○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실시**

- **(목적)**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의 적정성과 목표달성 여부, 기능상태와 욕구변화 등을 확인(평가)하기 위해 실시
- **(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 자체서식 활용 가능

○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전자) 동의 방법 추가**

- **(내용)** '스마트장기요양 앱'과 기관 포털을 연동하여 사용하는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전자)동의 방법 신설 ①직접동의(기존방식) 또는 ②모바일(전자) 동의 중 선택하여 전산 등록 가능
- **(유의사항)** 급여제공계획서의 모바일(전자)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닌 편의기능으로 기존 방식 그대로 동의 절차를 진행 가능, 동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
- **(모바일 전자동의 방법)**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자 1인 단말기 등록(PC)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후 최초 로그인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모바일(전자) 동의 요청 → 수급자(그 가족) 1인 급여제공계획서 확인, 모바일 동의(서명) → 동의 완료 된 급여제공계획서 공단 통보

※ 현재 완료된 서명 이미지 포털DB에 저장되나, 출력 서식에는 미표기 ('26년 전산 반영 예정)

○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자료**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그인) > 기관서비스 > 급여계약통보서 > 게시판 > 자료실

•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

12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25.6.~) | 급여이용기반부 1, 3팀

❖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이란?**
-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급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 포털) 내 급여 제공 과정을 기록·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운영 체계**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그동안 급여기록을 서면(또는 민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청구 자료만 다시 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비효율적 구조 지속

– 수급자 중심의 적정 급여제공 필요성이 지속 증가

– 386개소 기관에서 현장운영('22~'24년)을 통해 프로그램 검증 및 보완

○ **(목적)** 급여기록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적정 급여제공 체계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종이 기록물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행정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대상)** 가정방문형 재가기관 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기관 약 1.8만 개소

○ **(개시)** 2025. 6. 23. ~

○ **(항목)** 욕구조사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급여제공 결과평가 등의 급여내용을 전산에 기록

*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만 해당

○ **급여제공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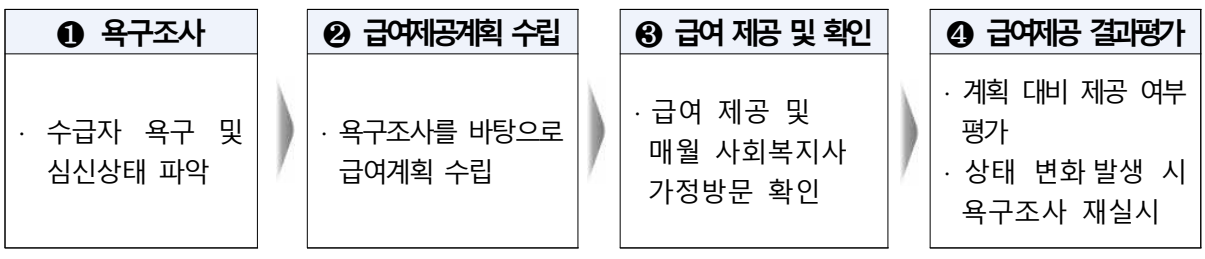

○ 전산 시스템 구성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급여제공관리'
- (메뉴) 수급자 관리,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내용 등

○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이해

☐ 추진 일정

시기	내용
'25.6월~	·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시 · 전산매뉴얼 및 온라인 교육자료(급여제공관리의 이해) 홈페이지 게재
'26.12월~	· 전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산 운영 확대 예정

13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 | 심사관리부 2팀

□ 추진목적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여, 타기관의 롤 모델화를 통한 **적정 청구문화 조성**

□ 주요내용

○ **청구 모범기관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운영**

– (기간) 2025. 4. 1. ~ 2026. 3. 31. … 매년 연 단위 선정

○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 420개소***

– 청구 역량을 갖추면서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배점 변경으로 객관성·형평성 제고

* 급여비용 적정청구, 평가등급, 환수내역 등 5개 기준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배점 합 상위기관 선정

※ ('18~'20년) 300개소→('21~'23년) 330개소→('24년) 410개소→('25년) 420개소

○ **(주요역할)**

– 청구 모범기관 롤 모델로서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

– 지역본부별 간담회 참석하여 청구 모범사례 등 현장의견 공유

○ **(인센티브)**

– 청구그린기관 증서 수여, 언론보도 등 대국민 홍보

–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 및 홈페이지 검색 시 별도 표기

– 청구상담 참고자료 및 공단 운영현황 등 나눔자료 매월 제공

○ **(기타)**

– 선정기간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은 청구그린기관 선정 취소 (동일대표 운영기관 포함)

–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홈페이지 청구그린기관 표기 대상 제외 등

14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 심사관리부 2팀

□ 추진목적

○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를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하여 **기관의 입장에서 지역 밀착형 청구상담** 제공

○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주요내용

○ **(선발 기준)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종사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청구경력: 전체 장기요양기관 근무월 수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등

○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지역본부 내 급여종류별 기관수를 감안하여 위촉

- (운영센터)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시행, 봉사자 신청·접수 및 추천
- (지역본부) 선발위원회 운영, 봉사자 선발 및 관리, 간담회 주관
- (본부) 상담 관련 교육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사업 운영 및 지역본부 지원

○ **청구상담 봉사자 역할**

- 자원봉사(재능기부) 형태의 활동 원칙, 사익목적 활동 불가
- (상담등록) 장기요양기관포털 로그인 후 직접 등록
  ※ 상담 즉시 전산등록 원칙, 다음달 5일까지 소급등록 가능

○ **청구상담 봉사자 인센티브**

- 청구상담 관련 자료 및 공단현안 사항 등 나눔 자료 매월 제공
-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분기별)
  ※ '25년 외식 모바일상품권 지급: 70명
- 격려물품 지급 및 우수 청구상당봉사자 포상 등

15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재가방문형) | 요양급여사후부 2팀

□ 추진배경 및 목적

○ **모바일 중심의 업무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화된 모바일 시스템 환경 제공 필요**

- 모바일(앱)을 활용한 급여제공관리 전산화 확대 및 사용자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업무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환경 구성

□ 주요내용

○ **스마트장기요양 앱(RFID) ⊕ The장기요양 앱(급여기록전산화) 통합 구축**

- 건강보험·공동·금융인증서 기반(생체인증 도입) 본인인증체계 적용
- 고령·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 디지털정보, 전자서명 활용 등을 통한 투명한 급여제공과정 관리
- 급여기록 디지털화로 수기기록 최소화 및 휴·폐업 자료 효율적 관리

○ **스마트장기요양 앱 태그 수령 및 태그 부착 처리기능 개선**

- **(태그수령)** 공단에서 태그 수령 시 앱으로 태그 스캔 및 수령자 전자서명으로 태그 수령완료 가능
- **(태그부착)** 현장에서 태그 부착 시 앱으로 부착위치 입력 및 사진촬영 후 부착처리 등록 가능

  ※ 기존 기관포털 내에서 부착정보(부착일, 부착자, 부착위치) 입력 기능 사용 가능

□ 참고자료

○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가이드**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 게시번호 60075번

○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용자 안내 동영상**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홍보관 > 동영상

  ※ 해당 동영상은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도 시청 가능

1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 제도 | 요양조사부 2팀

□ 추진목적

○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정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로 공익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 신고 대상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일체

○ 신고인 유형별 포상금

신고인 유형		최대 포상금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피신고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500만** 원
그 밖의 신고인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신고 방법

– 온라인

구분	세부경로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장기요양**(우측 상단) → 신청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 익명신고는 인터넷・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 서면: 내방·우편, 공단 지사(운영센터)·지역본부 접수

※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17 2025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운영 | 요양평가부 4팀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신규 기관**으로 개설 초기부터 기관운영, 수급자 관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필요**

※ '21년(시설) 43.6%, '23년(재가,짝수) 51.5%, '24년(재가,홀수) 50.9%

○ **(목적)**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한 사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대상:**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 **(교육컨설팅)** 컨설팅 실시 월 기준, 전 분기 신규 개설 기관

  ※ 분기별 실시('25.4.~6. 개설 기관 → '25.8. 교육컨설팅 실시 대상)

- **(현장컨설팅)** '24.1.1. ~ 12.31. 지정받은 기관 중 지역본부에서 선정

○ **방법 및 내용**

- **(교육컨설팅)** 본부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형 교육

  · 평가지표 구성내용, 매뉴얼 일반사항 등을 교육

- **(현장컨설팅)** 지역본부 기관방문,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수준진단 및 컨설팅

  · 1차 컨설팅 → 미흡지표 급여개선계획서 제출 → 2차 컨설팅(1차 80점미만)

○ **2025년 추진현황**

- 1차 컨설팅('25.6.~8.): 222개소 실시(평균 68.3점, 80점미만 135개소)
- 2차 컨설팅('25.8.~10.): 1차 80점미만 135개소 예정 … 1차 대비 개선 점검

□ 추진일정

공단			기관	공단
❶ 교육컨설팅 (3, 5, 8, 11월)	❷ 대상기관선정 (5~6월)	❸ 현장컨설팅(1차) (6~8월)	❹ 급여개선계획 제출 (6~9월)	❺ 현장컨설팅(2차) (8~10월)
• 분기별 실시간 영상 교육(본부주관) • 자체점검 안내	• 기관포털을 통한 신청(전산 도입) • 지역본부 자체 선정	• 기관방문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컨설팅 (수준진단, 개선지도)	• 1차 컨설팅 내용 반영 급여개선계획 제출 및 개선이행	• 1차 컨설팅 결과 80점 미만* 기관 2차 컨설팅 실시

* (80점 미만 기준) 최근 시설평가 점수 평균(79점) 및 재가평가점수 평균(81점) 상응점수 설정

18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멘토링 사업 운영 | 요양평가부 4팀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정기평가 결과 우수기관의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평가결과 중·하위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 **(목적)** 장기요양기관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형 평가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

□ 주요내용

○ **(참여대상)** 224개소(멘토우수기관(A) 63개소, 멘티중하위기관(C·D) 161개소)

- (지역본부) 87개소(멘토 18개소, 멘티 69개소) … 4개 지역본부 참여
- (운영센터) 137개소(멘토 45개소, 멘티 92개소) … 39개 운영센터 참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지역본부			운영센터			참여 운영센터
	합계	멘토	멘티	소계	멘토	멘티	소계	멘토	멘티	
기관 수	224	63	161	87	18	69	137	45	92	39

○ **(운영기간)** 2025. 7. ~ 11월(5개월)

○ **(운영내용)** 멘토우수기관 현장견학, 멘티중·하위기관 현장지원 등

구분	주요내용
멘토-멘티	▸ (멘토) 멘토링 활동일지 제출(월1회) ▸ (멘티) 자가진단서, 급여개선계획서, 만족도 작성·제출
멘토기관 현장견학	▸ 기관운영, 급여제공계획서, 미흡지표 등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 각종 프로그램, 직원교육, 환경·안전 등 현장체험
멘티기관 현장지원	▸ 멘토-멘티 교차현장학습을 통한 자율급여개선 지원 ▸ 멘토기관이 멘티기관에 3회 이상 방문하여 회의체 진행, 급여제공과정 기록 등 현장지원
자조모임	▸ 멘토기관과 멘티기관 간 자조모임 활성화

□ 추진일정

① 멘토·멘티 선정 (6 ~ 7월)	② 멘토링 교육 (7월)	③ 멘토링 실시 (7~11월)	④ 결과보고 (11~12월)
우수A-중하위C,D 기관 선정·매칭	운영센터 담당자 교육	간담회,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	멘토링 운영 결과보고

19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팀

□ 배경 및 목적

○ 인구 고령화 등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등) 수요 증가로 사용자 신체 상태·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 선택·사용법 등 관련정보 요구 증가

-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수요자의 적정제품 선택 및 이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

□ 주요내용

○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500여종)의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이동전시체험관 및 온라인 전시체험관 운영

<전시체험관>

<네이버 예약(QR)>

<이동전시체험관>

<온라인전시체험관(VR)>

○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 및 사용법 정보 제공(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고령자의 건강한 삶 지원 … 총 16편(목욕리프트, 수동침대 제외)

▢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바로가기(QR)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온라인전시체험관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참고자료 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기관관리부 4팀)

☐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 규정 바탕

유형	정의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 감금, 거주지 출입통제, 신체구속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 대화하지 않음 · 위협, 협박, 고함, 욕설, 모욕 등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기저귀 교체, 목욕케어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노인의 물건,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출처) 202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